

제한차량 운행허가서

다음은 조건으로 신청서 내용과 같이 운행허가 합니다. 허가받은 자
는 모든 운행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허가자 (인)

허 가 번 호		허 가 사 항	☐ 규격 ☐ 중량
허 가 기 간	년 월 일 부터	년 월 일 까지	
운 행 시 간	(오전 / 오후) 시 부터	(오전 / 오후) 시 까지	
운 행 허 가 조 건	기 본 조 건	1.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(이하 “허가차량”이라 한다)으로 인하여 도로, 도로 구조·시설 및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차량의 운행 허가를 받은 자, 허가차량을 실제로 운행한 자 또는 허가차량의 운행을 사실상 관리한 자 등(이하 “허가차량 운행 책임자”라 한다)에게 귀속됩니다, 2. 도로관리청은 제2호의 허가차량 운행 책임자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91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, 특히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3. 허가차량이 허가제원(폭, 높이, 길이, 축하중, 총중량) 또는 허가조건(운행노선, 운행시간,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·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)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으로 간주됩니다. 4. 도로관리청은 허가제원 또는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허가차량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80조에 따라 회차, 적재물의 분리 운송, 차량의 운행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5. 허가차량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책임은 허가차량 운행 책임자에게 귀속됩니다. 6. 「도로법 시행규칙」 제40조 및 「차량의 운행제한 규정」 제8조에 따라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규격화된 화물(생산공장에서만 분리·조립이 가능하여 완성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는 화물) 또는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규격화된 기계·기구류를 운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.	
	운 행 조 건	※ 운행경로 상의 각 도로관리청이 부여한 조건(운행시간, 운행방법 등)을 모두 기재합니다.	

※ 첨부서류

-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서 사본(원본대조필) 1부.